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제1716호 | 대학주보

오피니언

사설

구성원 참여 위축시킨 '비공개 원칙'

사립대학 총장 선임은 사립학교 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다. 대 학 총장 선임 권한은 법인 이사회 에 있다는 뜻이다. 하지만 법인은 지난 16대 총장을 구성원과 함께 마련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선임 했다. 구성원이 총장 선임에 민주 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수용한 결과다. 하지만 지난 총 장 선임 과정에서 경험한 전향적 인 제도는 이번 선임 과정에서 보 여진 '비공개 원칙' 등에 의해 후 퇴한 듯하다.

지난해 10월 구성원 대표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법인과 총장 선 임 과정에 관한 합의를 이뤘지만 이는 초빙·공모, 후보자 추천, 숙 의·자문, 후보 선정, 심의·의결, 임 용으로 이뤄진 선임제의 큰 틀에 머물렀다.

이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오롯이 법인 의 권한으로 돌아갔다. 큰 틀 못지

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관하다시피한 구성원 단체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.

초빙·공모 단계부터 아쉬운 점 이 있었다. 이 단계를 통해 총장 후보에 오른 인원은 17명뿐이었 다.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압축할 수 있는 후보자 최대 인원이 25명 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, 총장 후 보가 시작부터 17명이었다는 것 은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 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.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공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는지 생각해볼 지점이다.

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구성원 은 자신을 대신해 총장 후보자를 압축할 권한을 갖고 있던 총장후 보자추천위원을 뽑을 기회를 누 릴 수 없었다. 따라서 자신을 대 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총장 선임이 진행됐다. 17명 총장

않게 세부적인 규칙 역시 참여의 후보 명단과 후보자의 정책과 비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다. 전도 알 수 없었다.

> 세칙에 등장한 숙의 위원의 자 격 조건으로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최종 5인을 압축하게 됐음에도 비공개 원칙으로 구성 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도 없었다. 구성원의 선임과 정에 대한 참여 수준이 기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간선제라고 말하기도 어렵다.

법인은 '후보자 보호'를 위해 비 공개 원칙을 세웠다고 알려졌다. 이로 인해 최종 후보가 가려진 시 점에서조차 그들의 포부나 대학 운영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구성 원은 접근할 길이 없었다. 비공 개 원칙의 선한 목적을 이해못할 것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구성원 의 참여 수준이 극도로 낮아진 것 을 감안하면 충돌하는 두 개의 가 치 사이에서라도 최선의 방안을 만들 필요는 차기를 위한 숙제로

제16대 총장 선임부터 시작된 '구성원 참여'는 구성원이 총장 선 임에 민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. 하지 만 '비공개 원칙'과 더불어 세칙을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약화 시켰다.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임 제를 도입한 취지, 그리고 선임과 정 공개로 얻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'후보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'라 는 원칙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.

이번 선임과정이 지나치게 조용 했던 이유는 구성원의 관심이 낮 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 자체를 차단당한 제도적인 요인이 더 크 다는 구성원의 목소리는 경청할 만하다. 법인과 구성원 단체는 애 초 취지를 바탕으로 차기 총장 선 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폭을 넓 힐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진심으로 다가서길 기대한다.

세시봉

펜 뒤의 칼

김권수 기자 okb8888@khu.ac.kr



〈톱스타 L 씨, 마약 혐의로 내사 중〉, 제목만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. 피 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으 로 처리했지만, 기사의 내용은 그렇지 못했다. L 씨의 성별, 데뷔 연도 및 작 품 등을 기사에 써 알 만한 사람은 피 의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. L 씨가 유명 연예인 이선균 씨라고 알려지기 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반 복되는 논란에 결국 이 씨는 생을 마감

최근 유명 연예인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보도가 언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. 한 언론은 이 씨와 유흥업소 직원 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사건은 사생 활 문제로 바뀌어 갔다. 이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은 마약 투약 혐의와 직접적 인 연관이 없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 다.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유명 연 예인에게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은 유명 연예인에 낙인을 찍어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 했다.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안타까 운 마지막을 끝으로 사건은 종료됐다.

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언론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가혹한 처사 가 아닐까. 여전히 여러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을 화젯거리로 삼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. 하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 주를 이루거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낳는 경우가 많다. 이미지 가 생명인 연예인들에게 심각한 피해 를 주지만 정작 이에 대응할 방법은 마 땅치 않은 것이 안타깝다.

이러한 보도가 과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보도였는지는 의문이 다. 조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선정성과 상업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 까. 무성의하고 부실한 취재, 특종 심 리와 지나친 경쟁으로 자극적인 뉴스 가 주류가 돼버린 현 상황이 지금의 현 실이다. 사실과 다른 보도로 입은 이미 지 손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.

정부와 언론 기관 나눌 것 없이 문제 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 윤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. 현대 뉴스는 단순히 독자의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재 생산과 유통을 반복하기에 언론 기관의 신중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바다.

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| 개정된 대학 설립·운영 규정

경종으로 삼아야



김륜희 기자 poetry_5989@khu.ac.kr

교육부에서 발표한 〈대학 설립・ 운영 규정〉 개정. '자율적 혁신'이 라는 취지 아래 학령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태를 개 선하기 위함이다. 여기서 거론되 는 '대학'은 주로 지방 사립대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. 학생모집과 재정이 탄탄한 우리학교와는 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경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대입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변 생 심화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 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 다. 다만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에 서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을 가져야 할 이유다.

있다. 완화된 개정안의 기준만을 충족한 뒤 남는 토지와 건물을 사 학재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, 초빙·겸임교수 활용 증가로 비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이 늘어 강의의 안정성이 하 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.

교육부는 비대면 강의 확대를 고려해 교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.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 기존만큼의 강의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펜데믹이 종 료된 시점에서 이런 의도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을지는 의 문이다. 비대면 강의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강의라는 평이 학생 사이에 서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, 이번 개정의 취지는 비대면 강의 화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. 저출 확대로 학생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.

이렇듯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제를 가져온다. 그런 순간마다 융 방안을 수시로 제시해도 항상 다 통성 있는 방안을 정부와 대학에 른 곳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점과 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이 우려가 등장할 것이다. 앞으로 정 부와 대학 행보에 끊임없이 관심



만평 교육부의 급한 불 끄기

경희대학교 💎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| 사상의 민주화 |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(회기동) Tel 02-961-0093~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(서천동) Tel 031-201-3230~2

이메일 khunews@khu.ac.kr

인터넷 대학주보 http://media.khu.ac.kr/khunews

제작 청솔디자인 | 인쇄 옴니피앤디